

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공고
제2024-09호

2025년도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

부산지역 공동훈련센터·훈련과정 모집 및 선정 공고

2024. 10. 7.

1 사업 개요

□ 사업 목적

- 부산지역 산업 및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부산지역 고용률 제고
-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훈련수요를 충실히 반영하여 훈련참여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

□ 수행 근거

-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

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(직업능력개발의 촉진)

-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(1~5호 생략)

- 6. 사업주, 사업주단체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

-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3호, 제5호
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5호

- ① 생략

- 3. 「고용보험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(이하 “우선지원대상기업”이라 한다)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

- 5.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조사, 연구,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의 개발, 보급 등의 사업

□ 사업 내용

- ① 지역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사단체, 자치단체, 중기청, 고용센터 등이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

- ②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지역별 산업계 주도의 인력 수요조사를 실시

- ③ 지역 공동훈련센터 선정

- ④ “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 → 공동교육훈련 → 인력채용” 체계로 사업 운영

□ 공동훈련센터(파트너훈련기관)

○ 훈련기관별 기능

구분	기능	상호관계	지원내용
공동 훈련센터	지역 내 주된 훈련 공급	파트너훈련기관 선도	인프라지원금 및 훈련비용
파트너 훈련기관	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기 어려운 직종에 대해 협업하여 훈련 공급	공동훈련센터와 협력 (공동훈련센터 훈련계획에 포함)	훈련비용

○ 공동훈련센터

【공동훈련센터 신청가능기관】

- ◆ 『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』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
- ◆ 사업주단체 및 그 연합체
- ◆ 『고등교육법』에 따른 대학, 전문대학(방송대학, 통신대학, 사이버대학은 제외)
- ◆ 『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공공기관 중 훈련사업 실시 경험이 있는 기관
- ◆ 자치단체가 공공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관(비영리기관만 해당)

-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할구역 내 소재한 훈련기관
- ‘2025년 부산지역 우선훈련직종’ 등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지정한 훈련 분야 관련 인력양성이 가능한 훈련기관
- 훈련인프라 및 협약기업 관리 역량이 우수한 훈련기관
- ‘이행보증보험증권’ 및 ‘지급보증서’ 제출이 가능한 기관

○ 파트너훈련기관

【파트너훈련기관 신청가능기관】

- ◆ 『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』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(공공직업훈련기관 외 지정직업훈련 시설(민간직업훈련기관)까지 포함)
- ◆ 사업주단체 및 그 연합체
- ◆ 『고등교육법』에 따른 대학, 전문대학(방송대학, 통신대학, 사이버대학 제외)
- ◆ 『평생교육법』에 의한 평생교육시설
- ◆ 『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공공기관 중 훈련사업 실시 경험이 있는 기관
- ◆ 『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평생직업교육학원
- ◆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

□ 지원내용

○ 공동훈련센터

구분	지원항목		지원한도	지원비율	대응투자 (20%)
인프라지원금	운영비	인건비	4억 원	80%	필수
		일반운영비		100%	-
	훈련시설 및 장비비		15억 원	80%	필수
	프로그램 개발비		1억 원	100%	-
훈련비용	훈련비용 (훈련비+수당+숙식비 등)		훈련비용 심사 결과 확정 금액		

※ 인건비 및 시설장비비의 지원비율이 100%인 기관(대응투자 면제기관)

- ①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- ②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보호·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
- ③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기관
- ④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국·공립대학교
- ⑤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5호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
- ⑥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
- ⑦ 「상공회의소법」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공동훈련센터

○ 파트너훈련기관: 훈련비용(훈련비+수당+숙식비)만 지원

□ 2024년 부산지역 지산맞 공동훈련센터(파트너훈련기관) 참여 현황

구분	훈련기관명	특성화 훈련분야	사업참여기간	비고
공동 훈련 센터	국립한국해양대학교	운전·운송(선박)	2014~2024년(11년)	
	국립부경대학교	건설, 정보통신	2015~2024년(10년)	
	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	기계(조선), 정보통신	2014~2024년(11년)	
	(재)부산디자인진흥원	디자인 등	2015~2024년(10년)	
	한국폴리텍7대학 동부산캠퍼스	기계, 재료(용접) 등	2023~2024년(2년)	
	한국폴리텍7대학 부산캠퍼스	기계, 전기·전자 등	2014~2024년(11년)	
파트너 훈련기관	해당사항 없음			

2 2025년 부산지역 공동훈련센터 및 훈련과정 모집

□ 사업기간: 공동훈련센터 선정 후 약정 체결일~2025. 12. 31.까지

□ 부산지역 훈련규모

(단위: 명, 연인원 기준)

구분	계	채용예정자(양성)훈련	재직자(향상)훈련
훈련규모(목표인원)	3,200	200	3,000

□ 부산지역 훈련비용 예산(안)

○ 2025년도 부산지역 훈련비용 예산: 1,991,478천 원

- 정기 심사 후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수시 훈련과정 훈련비로 활용

※ 훈련비용=훈련비+수당+숙식비

□ 부산지역 우선훈련직종

○ 채용예정자(양성): 18개 직종

연번	한국고용직업분류(KECO 중분류)	연번	한국고용직업분류(KECO 중분류)
1	028 무역·운송·생산·품질 사무원	10	621 항공기·선박·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
2	131 컴퓨터하드웨어·통신공학 기술자	11	811 기계장비 설치·정비원 (운송장비 제외)
3	133 소프트웨어 개발자	12	812 운송장비 정비원
4	134 데이터·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	13	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용원
5	151 기계·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	14	816 기계 조립원(운송장비 제외)
6	153 전기·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	15	821 금속관련 기계·설비 조작용원
7	155 에너지·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	16	824 용접원
8	158 소방·방재·산업안전·비파괴 기술자	17	834 전기·전자 설비 조작용원
9	415 디자이너	18	836 전기·전자 부품·제품 조립원

※ 위 내용은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“2024년 부산지역 인력 및 훈련 수급조사 분석”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우선훈련직종이며, KECO 연번 순임

○ 재직자(향상): 22개 직종

연번	한국고용직업분류(KECO 중분류)	연번	한국고용직업분류(KECO 중분류)
1	028 무역·운송·생산·품질 사무원	12	811 기계장비 설치·정비원(운송장비 제외)
2	131 컴퓨터하드웨어·통신공학 기술자	13	812 운송장비 정비원
3	133 소프트웨어 개발자	14	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용원
4	134 데이터·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	15	815 자동조립라인·산업용로봇 조작용원
5	140 건축·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	16	816 기계 조립원(운송장비 제외)
6	151 기계·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	17	817 운송장비 조립원
7	153 전기·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	18	821 금속관련 기계·설비 조작용원
8	155 에너지·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	19	824 용접원
9	158 소방·방재·산업안전·비파괴 기술자	20	835 전기·전자 부품·제품 생산기계 조작용원
10	415 디자이너	21	836 전기·전자 부품·제품 조립원
11	621 항공기·선박·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	22	852 고무·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용원 및 조립원

※ 위 내용은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“2024년 부산지역 인력 및 훈련 수급조사 분석”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우선훈련직종이며, KECO 연번 순임

○ 4차 산업 신기술 분야*

① AI	② 클라우드	③ IoT
④ 메타버스	⑤ 5G·6G	⑥ 일반SW
⑦ 블록체인	⑧ 빅데이터	⑨ 사이버보안
⑩ 이차전지	⑪ 지능형로봇	⑫ 항공드론
⑬ 3D프린팅	⑭ 첨단소재	⑮ 차세대 반도체
⑯ 차세대 디스플레이	⑰ 바이오헬스	⑱ 에코업
⑲ 신재생에너지	⑳ 수소	㉑ 양자
㉒ 우주	㉓ 나노	㉔ 기타 신기술

* 한국산업인력공단, “2025년도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공동훈련센터 선정 및 사업계획 심사방향” 참고

○ 부산지역 지역특화산업

- 초정밀소재부품산업
- 저온고압에너지저장공급시스템산업
- 실버케어테크산업

* 부산광역시, “2024년 부산지역산업진흥계획”, 2023 참고

3

2025년도 부산지역 공동훈련센터 선정 기준

구분	내용	비고	
① 계획인원(목표인원)	공동훈련센터별 연인원 500명 이상	○ 2025년부터 계획인원은 종전 (~'24년)과 달리 정기 과정으로만 편성	
② 협약기업	최소 30개 이상	○ 관할(부산광역시) 80% 이상, 광역(전국) 20% 이하	
③ 훈련수준별 훈련단가 지원요율	100~150% 이내	○ 일반과정	
	100~200% 이내	○ NCS 4수준 이상이고, 지역특화 과정	
	100~300% 이내	○ NCS 5수준 이상이고, 고속련·신기술 과정	
④ 채용예정자 훈련과정	훈련시간	(항상훈련) 최소 훈련시간 4시간 이상	○ 훈련과정 내실화 및 훈련 성과를 고려하여 8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대하여 심사 시 우선 고려
		(채용예정자 훈련) 최소 및 최대 훈련시간에 대한 제한 없음	○ 훈련수당의 경우 월평균 훈련시간 120시간 1개월 이상 운영 시 지급
	채용예정자 과정 훈련실적이 있는 경우	지산맞 훈련실적이 있는 경우	○ 지산맞 채용예정자 전체 과정의 최근 2개년 평균* 취업률이 60% 이상인 경우 개설 가능 * 2022. 7. 1.~2024. 6. 30.
		지산맞 훈련실적이 없는 경우	○ 내일배움카드제 등 기관의 채용예정자과정의 평균 취업률이 60% 이상인 경우 개설 가능
	채용예정자 훈련실적이 없는 경우	기관별 1개 과정 (1회차, 600시간 이내)에 한해 승인 가능	○ 해당 분야 수요 및 항상훈련 실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 판단하여 승인
채용약정서	'채용약정서(훈련인원의 80% 이상)' 및 '채용예정자 훈련 운영안내 확인서'는 실시 신고 시 제출	○ 부산지역은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의 채용약정서는 심사 시 제출 - 2016년 이후 既 시행	
⑤ 파트너 훈련기관	훈련기관 인증평가 1년 이상 보유	○ 파트너훈련기관 활용 과정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승인	
⑥ 훈련방식	(원칙) 대면 집체훈련	○ 온라인 원격대체 과정 승인 불가	
⑦ 기타	○ 정부지원금 유용, 기관 내부 갈등, 부정행위 등으로 사회 물의를 일으킨 기관은 공동훈련센터 선정 불가 ※ "사회적 물의"에 대한 판단은 지역인자위에서 적의 판단 ○ 교육부 주관 "대학기본역량진단" 결과 '25년도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에서 제외된 대학(파트너훈련기관 포함)은 선정 불가		

4

2025년도 부산지역 훈련과정 선정 기준

□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훈련과정 선정 필수 요건

○ 우선순위 고려사항

- ① 부산지역 과소공급 과정(훈련수요를 반영)
- ② 부산지역 현안 및 주력산업 관련 등 부산인자위가 필요하다고 심의·의결한 과정
- ③ 취업률(채용예정자), 수료율, 전년도 훈련규모 등 실적을 반영
- ④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·신기술 과정(24개 분야)
- ※ 2025년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시 우대 예정
- ⑤ 취약계층(중장년, 경단녀 등) 특화과정
- ⑥ IT·ICT서비스·SW개발, (정보)통신업, 콘텐츠·방송산업 등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직종

○ NCS(국가직무능력표준) 적용 훈련과정

- ① (향상훈련) 기업 및 재직자의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능력단위 또는 능력단위요소를 토대로 과정을 편성하되, NCS 기반 훈련기준 미적용 가능
- ② (채용예정자 훈련) 반드시 NCS 적용과정으로 편성

- (NCS 적용 비율) NCS기반 훈련기준이 총 훈련시간의 40% 이상 편성 시 적용과정으로 인정
- (NCS 형식 요건) '능력단위' 편성
- 직업기초능력 훈련시간은 훈련시간이 350시간 이상이고, NCS 적용 비율이 70% 이상인 경우 총 훈련시간의 10% 이내에서 NCS 적용시간 인정(단, NCS 70% 미만 편성 시, NCS 비적용 시간으로 인정)
- * 총 훈련시간의 10% 이상 초과된 직업기초능력시간은 NCS 비적용 시간으로 인정

□ 고품질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단가 추가 지원

구분	훈련단가 지원 내용
일반과정	○ NCS 기준단가 100~150% 이내
지역특화 과정*+NCS 4수준 이상	○ NCS 기준단가 100~200% 이내
고속련·신기술 과정**+NCS 5수준 이상	○ NCS 기준단가 100~300% 이내

- * (지역특화 과정)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른 주력 및 특화산업 또는 지자체에서 특화·위기로 지정한 산업
· (부산지역 지역특화산업) 초정밀소재부품산업, 저온고압에너지저장공급시스템산업, 실버케어테크산업
- ** (고속련·신기술 과정) 신기술 분야는 고용노동부 신기술인력양성총괄TF의 "24개 분야"(별첨)에 해당되며, 훈련과정의 해당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판단

□ '24년 지원된 프로그램 개발비로 개발된 훈련과정 필수 운영

-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을 통해 개발된 훈련과정의 경우 '24년 미운영 시 '25년에는 해당 훈련과정을 반드시 운영해야 함

□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훈련과정으로 적합하지 않은 훈련과정

- ① 부산지역 훈련 수요·공급 조사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과정
- ②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부산지역 내 훈련수요나 부산지역 내 기업의 사업영역 및 주된 직무와 연관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③ 민간훈련기관 등에서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경영·회계·사무(NCS 중분류 01~03) 과정과 협약기업의 근로자가 쉽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
- ④ 해당 훈련과정의 운영능력(예: 훈련시설·장비, 훈련과정의 질, 교·강사 등)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과정
- ⑤ 해당 훈련과정의 실시계획서가 부실하여 적정하게 운영될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과정
- ⑥ 학습목표, 학습대상자 등이 구분됨에도 하나의 과정으로 연속적으로 설계된 과정(예: 초급·중급·고급 과정을 한 과정으로 개설)
- ⑦ 훈련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, 당해 연도 내 과정의 80%를 이수하지 못하는 훈련과정
- ⑧ 공동훈련센터 선정 신청을 한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생산품을 이용해서 실시하는 훈련 과정(예: 훈련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협력기업에 판매하고 해당 협력기업 근로자에게 해당 제품의 사용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)
- ⑨ 법령에서 정한 '공통법정의무교육' 과정 또는 해당 훈련과정에서 일부 훈련내용을 추가하여 실시하는 과정
- ⑩ (타 사업 지원 과정) 자격증 대비 과정 및 사업주훈련 등 타 정부 지원을 통해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자위가 판단하는 과정

□ “사업주훈련 과정인정요건”에 부합하는 과정만 적격 처리하고 부합하지 않는 과정은 부적격 처리 또는 훈련과정계획 수정 요구

서비스업종 중 타 훈련사업 등을 통해 민간훈련기관에서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직종*은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훈련과정으로 비권장

* (예시) 간호조무사, 영양보호사(노인간병인), 이·미용, 각종 조리(요리) 과정, 제과·제빵 과정, 기초 OA 과정(엑셀, 파워포인트 등의 단순 사무관리 과정 등)

경영·회계·사무(NCS코드: 대분류 02, 중분류 01~03) 등 민간훈련시장에서 공급이 원활한 과정은 인정 제외

○ NCS코드 대분류 02, 중분류 01~03은 인정 제외

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□ 접수기간: 2024. 10. 7.(월)~18.(금) 17:00까지

-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, 주말 및 공휴일은 접수받지 않음
- 신청을 희망하는 훈련과정에 대해 **훈련과정일람표 사전 제출 필수**
 - 제출기한: **2024. 10. 14.(월) 12:00까지**
 - ※ 기한 내 **훈련과정일람표 미제출**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은 사업계획서 접수 불가
 - 제출방법: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메일(busanhrd@korcham.net) 제출
 - 제출내용: 2025년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훈련과정일람표

□ 제출서류

- 공동훈련센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A권, B권)
 - 공동훈련센터 신청서(원본) 및 공문 각 1부
 - 사업계획서 제본(B권) 10부
 - ※ 사업계획서 A권은 전자파일로만 제출(제본 미제출)
 - 사업계획서(A권, B권) 전자파일(USB) 1개
- 지원금 및 훈련비 신청 현황(Excel)
- 기타 증빙자료
 - 강사 자격 증빙서류
 - (학력) 졸업증명서, 학위증, 학위취득증명서
 - (경력) 경력증명서(경력기간, 담당업무, 직인 필요)
 - (협약기업 리스트) HRD-Net 다운로드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
 - ※ 협약기업이 1년 이상 공동훈련센터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약일자를 확인하여 1년 초과 협약서일 경우 최근 일자로 갱신
 - (훈련비 산출 증빙자료) 서류심사 시 제출하기 어려운 증빙자료는 현장심사 시 확인
 - (교재,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등) 서류심사 시 제출하기 어려운 증빙자료는 현장심사 시 확인

□ 접수방법: 방문 또는 우편 접수(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)

□ 접 수 처: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

6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(안)

주요업무	주요내용	일정
'25년 공동훈련센터 모집 및 선정 공고	○ 부산인자위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공지	10. 7.(월)~18.(금)
↓		
'25년 공동훈련센터 모집 및 선정 설명회 개최	○ 2025년 부산지역 우선훈련직종 발표 ○ 참여요건, 지원내용, 절차 및 일정 등 안내	10. 7.(월) 10:30
↓		
사업계획서 신청·접수	○ 훈련과정일람표 사전제출: 10. 14.(월) 12:00까지 ○ 사업계획서 제출: 10. 18.(금) 17:00까지 ○ 공동훈련센터는 직접 제출, 파트너훈련기관은 공동훈련센터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	10. 7.(월)~18.(금)
↓		
1차(서류) 심사	○ 서류 검토 등을 통한 정량평가 ○ 1차 심사 탈락 시 현장심사 미 실시	10. 22.(화)
↓		
2차(현장) 심사	○ 현장 확인 및 인터뷰 심사를 통한 정성 평가	10. 23.(수)~30.(수)
↓		
종합 심사	○ 공동훈련센터별 사업계획 조정 및 확정 ○ 공동훈련센터별 예산 조정 및 확정	10. 31.(목)
↓		
'25년 부산지역 지산맞 사업계획 부산인자위 심의·의결	○ 1~2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'25년 부산 지역 지산맞 사업계획 심의·의결 (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본위원회)	11월 둘째 주
↓		
'25년 지산맞 사업계획 공단 심사 및 공단 심의·의결	○ '25년 지산맞 사업계획 심사 (한국산업인력공단 심사위원회) ○ '25년 지산맞 사업계획 심의·의결 (한국산업인력공단 심의위원회)	11월 말~12월 중
↓		
'25년 훈련생 선발 및 훈련 실시	○ 공동훈련센터-협약기업 간 협의를 통한 훈련생 선발 및 훈련 실시	2025. 1. 1.(월)~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7 모집 설명회 개최

- 일시: 2024. 10. 7.(월) 10:30~12:00
- 장소: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4층 소통공감회의실
- 대상: 2025년 부산지역 공동훈련센터 신청 희망 훈련기관 관계자 등
- 진행순서

시간	주요 내용	비 고
10:30~10:40	○ 개회 및 인사말씀	부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,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
10:40~11:00	○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소개 ○ 2024년 부산지역 인력 및 훈련수급 조사 분석 결과 발표	
11:00~11:30	○ 2025년 부산지역 공동훈련센터 참여 방법 설명 ○ 공동훈련센터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설명	
11:30~12:00	○ 질의응답	
12:00~	○ 폐회	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별첨 1

24개 신기술 분야 정의

연번	기술명	정의
1	AI	○ 인간의 학습능력, 추론능력, 지각능력,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이며 하나의 기반 기술이자 범용 기술
2	클라우드	○ 언제 어디서나 필요에 따라 ICT 자원, 서비스 개발환경, 응용SW 등의 서비스를 유연하게 활용 할 수 있는 컴퓨팅 방식
3	IoT	○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과 사물, 사물과 사물 간 지능통신을 할 수 있는 M2M 개념을 인터넷으로 확장하여 현실과 가상세계의 모든 정보와 상호작용하는 개념
4	메타버스	○ ‘초월’을 뜻하는 메타(Meta)와 ‘세상’을 뜻하는 유니버스(Universe)의 합성어로,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면서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
5	5G·6G	○ (5G) 기존의 4세대 이동통신인 LTE에 비해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(초고속) 전송하고 실시간으로(초저지연) 모든 것을 연결(초연결) ○ (6G) 초성능/초대역/초정밀/초지능을 바탕으로 XR콘텐츠, 완벽한 AI기술 적용, 등 구현 가능
6	일반SW	○ 컴퓨터, 통신,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·제어·입력·처리·저장·출력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·명령의 집합 등을 의미
7	블록체인	○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가 모든 거래 내역 등의 데이터를 분산, 저장하는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
8	빅데이터	○ 데이터의 저장/추출/정제/분석에 기존의 도구를 활용할 수 없을 정도의 양과 처리 속도를 갖는 상태를 의미
9	사이버보안	○ 사이버 보안이란 사이버환경에서 다양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개인·기업·국가의 안전과 신뢰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
10	이차전지	○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켜 외부의 회로에 전원을 공급하고, 방전되었을 때 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아 전기적 에너지를 화학적 에너지로 바꾸어 전기를 저장하는 전지
11	지능형로봇	○ 외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지능 시스템 및 관련 기반기술을 개발 또는 생산
12	항공드론	○ 지능적 기능을 통해 자율 비행능력을 갖춘 항공기를 포함하는 무인 항공기 제조, 무인항공기와 연결하는 전자 장치 및 운용 시스템을 개발 또는 생산, 활용하는 산업
13	3D프린팅	○ 디지털 설계/디자인 데이터를 이용, 소재를 적층하여 3차원 물체를 제조하는 산업으로 정의
14	첨단소재	○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기초 물질, 또는 이를 활용하여 미래 소재의 수요 바탕으로 소재별 융·복합을 통해 성능과 기능을 향상하는 기술
15	차세대 반도체	○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능을 포함하거나 성능과 소모 전력을 개선하여 고도화 분야(차세대 이동통신, 자율주행차 등) 및 미래 신시장 분야(지능형로봇, 실감형콘텐츠 등) 등의 주요 기기의 부품이 되는 반도체
16	차세대 디스플레이	○ 주요 응용기기들의 정보를 제약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크기, 해상도, 화질, 소비전력, 시인성 등의 성능이 개선되거나 새로운 형태의 디스플레이
17	바이오헬스	○ 생명공학 및 의·약학 지식에 기초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(의약품, 의료기기, 화장품)하거나 서비스를 제공(의료서비스)하는 산업
18	에코업	○ 기후대응, 물관리, 자원순환관리, 환경지식정보감사 서비스, 환경안전보건, 대기관리, 환경복원 및 복구, 지속가능환경자원
19	신재생에너지	○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·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, 또는 햇빛·물·지열·강수·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
20	수소	○ 수소를 생산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기술
21	양자	○ 양자 고유의 특성(얽힘, 중첩 등)을 활용하여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 넘는 초고속연산(양자컴퓨팅), 초신뢰 보안(양자통신), 초정밀계측(양자센서)을 가능케 하는 기술
22	우주	○ 인공우주물체의 설계·제작·발사·운용 등에 관한 연구활동 및 기술개발활동 또는 우주공간의 이용·탐사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
23	나노	○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(100nm이하)에서 조작·분석하고 제어하여 새롭거나 개선된 물리적·화학적·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·소자 등을 만들어 내는 과학기술
24	기타 신기술	○ 위 23개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신기술